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20272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3425	정부	‘25. 10. 1.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5.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상정, 축조심사
	2214128	김선교의원	‘25. 11. 11.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1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4.28.) 상정, 축조심사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가목).

나.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관련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가목 중 “학생들”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을 “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로, “제8조 및 제8조의2”를 “제8조, 제8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생 략)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 략)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u>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u> 나. ~ 마.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 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u>제8조 및 제8조의2</u> 를 각각 준용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 <u>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u> ----- 나. ~ 마.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 ----- ----- ----- --- <u>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업비 등의 보조</u> ----- ----- ----- <u>제8조, 제8조의2 및 제22조</u> -----

